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23-20호**  
**2023. 04. 14.(금)**

## 차 례

### 조 례(1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51호) ..... 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52호) ..... 5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조례 제1653호) ..... 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드림카드 지원 조례 폐지 조례(조례 제1654호) ..... 11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55호) ..... 1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56호) ..... 16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57호) ..... 2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58호) ..... 26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59호) ..... 2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60호) ..... 31

### 규 칙(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951호) ..... 33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952호) ..... 36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953호) ..... 39

### 훈 령(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훈령 제478호) ..... 4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훈령 제479호) ..... 44

## 차 례

### 고 시(2)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고시 제2023-38호) ..... 47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23-39호) ..... 48

### 공 고(6)

- 무연고 사망자 공고(공고 제2023-426호) ..... 49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3-428호) ..... 50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3-430호) ..... 51
- 2023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비 신청 공고(공고 제2023-434호) ..... 56
- 2024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계획 공고(공고 제2023-441호) ..... 59
- 공시송달공고(공고 제2023-446호) ..... 62

### 입법예고(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440호) ..... 68

### 행정예고(1)

- 대덕구청 CCTV 증설에 따른 행정예고(공고 제2023-427호) ..... 79

공									
람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14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51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4% 이내	32% 이내	30% 이내	6% 이상

#### 2.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35% 이내	35% 이내	30% 이상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816					
정무직	소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소계	812					
	3급	1	1				
	4급	6	4		1	1	
	5급	47	26	3	4	2	12
	6급 이하	758					
별정직	소계	3					
	5급 상당	1	1				
	6급 상당	1	1				
	7급 상당	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단체장의 효율적인 보좌업무 추진을 위해 총 정원 내에서 공무원의 직종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일반직을 813명에서 812명으로, 별정직을 2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정비함(안 별표 2 및 별표 3).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14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52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제27조, 「유아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를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제2항,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 및 제27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사립유치원”이라 함은 법 제7조제3호”를 ““사립유치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로, “의해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을 “따라 설립·경영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유아”라 함은 만”을 ““유아”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립유치원등에 다음 각호”를 “사립유치원 등에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간식비

제3조제1항제4호(중전의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중 “사립유치원등”을 “사립유치원 등”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중 “1월이내”를 “2개월 이내”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3조 중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건강하고 올바른 유아 식생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등에 대한 지원 근거와 지원범위를 명시 및 신설하고 기능상 유사·중복되는 지원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각각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사립유치원 등에 대한 간식비 지원의 근거를 명시함(안 제1조).
- 나. 만 나이 정착을 위하여 나이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제2호).
- 다. 사립유치원 등에 대한 지원의 범위에 간식비를 신설함(안 제3조제1항).
- 라. 개정된 상위법령의 명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첩되는 지원범위 단서 조항의 각 호를 각각 삭제함(안 제3조제2항).
- 마. 기능상 유사·중복되는 지원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각각 삭제함(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
- 바. 지원대상의 의무인 정산서 제출기한을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및 조례와 같도록 1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함(안 제10조).
- 사. 그 밖의 일부 조항 어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14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53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경우회의 자긍심과 구민의 안전 및 공공질서 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되어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사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구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중복지원 금지) 경우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경우회의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정이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구민에 대한 봉사 및 치안 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다.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14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54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 폐지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 조례」(2022. 04. 15. 시행)에 따라 추진하던 어린이 드림카드 사업이 종료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 조례」를 폐지함.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14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55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7. 학교 밖 청소년 건강 증진·의료 지원 사업
8.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직업교육·취업지원 사업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후단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2. 대안교육기관 학생 급식 지원 사업
3.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중 “대덕구”를 “대전광역시 대덕구”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87호, 2021. 1. 12. 제정, 2022. 1. 13. 시행) 제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및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대안교육기관의 뜻을 법령과 동일하게 정비함(안 제2조).
-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5조).
- 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함(안 제10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14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56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 4.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
-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2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취소 :”를 각각 “취소:”로 하고, 같은 목 중 “공제 후”를 “공제 후”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경우 :”를 “경우:”로, “일 수 만큼 일할 계산한”을 “일수만큼 일할계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체육시설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다. 사용일 이후 취소·정지하는 경우: 취소·정지일까지의 미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제17조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2조 관련)

명 칭	구 분	위 치
대덕문화체육관	체육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86번길 85 (목상동)
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48번길 120 (신일동)
	실외테니스장	
	족구경기장	
대덕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86번길 101 (목상동)
	헬스장	
	다목적실	
송촌생활체육공원	실외테니스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110, 실외테니스장 (송촌동)
	풋살경기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풋살경기장 (법동)
	족구경기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족구장 (법동)
	배드민턴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배드민턴장 (법동)
	게이트볼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게이트볼장 (법동)
	농구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농구장 (법동)
	X-게임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X-게임장 (법동)
로 하 스 산 호 빛 공 원	야외수영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27번길 200 (석봉동)
송 촌 전 친 후 게 이 트 볼 장	게이트볼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로 57 (송촌동)
대 청 수 상 레 포 츠 센 터	관리동 및 승선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167 (신탄진동)
	하선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27번길 200 (석봉동)
로 하 스타 위 1 어 린 이 스포 츠 센 터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167 (신탄진동)
덕 암 야 구 장	야구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산 9-7번지

[별표 2]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 징수기준(제10조 관련)

가. 전용사용료

(단위: 원)

시 설 명	사용구분	기 준	구 분		비 고	
			평 일	주 말		
대덕문화체육관	체육경기	1회 (1일, 4시간)	50,000	75,000	○야간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체육경기 외	1회 (1일, 4시간)	62,500	93,800		
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	체육경기	1회 (1일, 2시간)	37,500	62,500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한 금액 징수함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이면 1시간으로 계산함	
		1회 (1일, 4시간)	62,500	93,800		
	체육경기 외	1회 (1일, 2시간)	75,000	125,000		
		1회 (1일, 4시간)	125,000	187,500		
족구경기장	체육경기 등	1면, 2시간	3,000	5,000		
대 덕 국 민 체 육 센 터	수영장	체육경기	1회 (1일, 4시간)	200,000	300,000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일 경우 대덕문화체육관 및 을미기 체육공원 축구장 전용사용료의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 총사용료 기준
		체육경기 외	1회 (1일, 4시간)	300,000	450,000	
	다 목 적 실	1회 (1일, 4시간)	40,000	60,000	○다목적실 1실 사용료 기준	
풋살경기장	체육경기 등	1면, 1시간	12,500	25,000	○조명 사용 시 사용료에 1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일 경우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조명 사용료 제외)	
대 청 수 상 레 프 르 츠 센 터	체육경기 외	1회 (1일, 8시간)	1,000,000	1,000,000	○사용가능 시간(09~18시)	
		1회 (1일, 8시간)	1,300,000	1,800,000		
덕 암 야 구 장	체육경기 외	1회 (1면, 2시간)	40,000	80,000	○사용가능 시간(09~18시)	
		1회 (1면, 2시간)	50,000	100,000		

나. 시설사용료

(단위: 원)

시 설 명	사 용 료				비 고	
	사용구분	어 른	청 소 년	어 린 이		
대덕문화체육관	월 회원권	30,000	22,000	15,000	○1회 이용 단체 입장자는 5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1회 이용	2,200	1,700	1,400		
대덕국민 체육센터	수영장 (자유이용)	월 회원권	52,000	38,000	29,000	○1회 이용 단체 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1회 이용	4,300	2,700	2,000	
	수영장 (강습)	월 회원권	62,000	48,000	39,000	
		월 회원권	50,000			
	헬스장	1회 이용	2,500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일 경우 헬스장과 다목적실 시설 사용료의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다목적실	월 회원권	62,500		○프로그램 참가 월 회원		
실외테니스장	평 일 (1면, 1시간)	4,000			○조명 사용 시 3,000원 추가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일 경우 5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조명 사용료 제외)	
						주 말 (1면, 1시간)
로하스산호빛공원 야외수영장	1회 이용	6,300	5,000	3,800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입장 시 보호자 동반해야 함 ○1회 이용 단체 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일 경우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어린이스포츠센터	1회, 2시간	5,000	-	17,000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대 청 수 상 레 프 르 츠 센 터	카누·카약	1회 이용	25,000	23,000	20,000	○입장 가능 연령을 7세 이상으로 제한함 ○1회 이용 단체 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1회 이용	20,000	18,000	15,000	
	노 보 트	1회 이용	10,000	6,000	4,000	
		1회 이용	20,000			
	수상자전거 (2인승)	1회 이용	12,000			
		1회 이용	15,000			
범퍼보트 (2인승)	1회 이용	15,000				

다. 부속설비 사용료

구 분	사 용 료	비 고
음향시설 (확성기 및 마이크)	기본료(30,000원)+마이크 1대당 5,000원	
전 기 료	① 주변압기 전력기본요금×1.1 ② 전력사용량(kw)×전력요금×1.1	
냉방·난방 시설	기본료(30,000원)+(전기요금 및 유류대 설비)	
전 광 판	30,000원(1회)	

라. 중계 방송료

(단위: 원)

종 류	기 준	방 송 료		비 고	
		TV	라 디 오		
프 로 경 기	국제경기	1일	30,000	18,000	
	국내경기	1일	18,000	10,000	
아 마 추 어	국제경기	1일	15,000	8,000	
	국내경기	1일	8,000	6,000	
체 육 외 행사		1회	40,000	20,000	
녹화 또는 행사			중계 방송료의 1/2 해당액		
경기 또는 행사촬영			TV중계 방송료와 동일		

마. 상행위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기준 및 규격	사용료	비 고
에드벌론 및 유사물 계약에 의한 광고행위	1일 1개	5,00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 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함 (다만, 일출 시부터 일몰 시까지)
그 밖의 사용료 (선전광고 게시 등)	1M×10M 이내	50,000	○ 5일 이내: 50,000원 ○ 매 1일 경과 시 5,000원 추가 ○ 연간 게시: 공개경쟁입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신설 등으로 인한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고, 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사용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비자권익 개선을 위한 반환 규정 및 인용 법령의 명칭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신규 시설의 명칭·위치를 추가하고 기존 시설의 명칭을 정비함 (안 별표 1).
- 나. 시설별 사용료를 정비함(안 별표 2).
- 다. 사용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정비함(안 제11조제1항제4호).
- 라. 소비자권익개선을 위한 반환 규정을 정비함(안 제12조제2호).
- 마. 인용 법령의 명칭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7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14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57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구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와 대전광역시”를 “대전광역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을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으로, “기르고 이를”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 제2호”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환경교육위원회”로 한다.

제6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환경교육진흥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교육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위촉된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16호, 2022. 6. 10., 일부개정) 개정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 환경교육 지원 확대 대상 반영 및 용어 정비 등을 통해 상·하위 법령간 통일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22. 6. 10. 시행)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함.
  - 1) 상위 법 제명 변경에 따른 조례명을 변경함(안 제명).
  - 2) 상위 법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함(안 제1조, 제2조제2호).
  - 3) 환경교육 지원 대상을 확대함(안 제6조제1호의2 신설).
- 나. 상위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조례 제정 목적을 정비함(안 제1조).
- 다. 상위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조례 용어 정의를 정비함(안 제2조 제1호, 제5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1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5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미용기기 및 용기 등의 제조·개발, 기능 향상에 관한 산업  
제4조의 제목“(지원사업)”을“(지원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뷰티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뷰티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3호 신설).
- 나. 지원사업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14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59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1조”로 한다.

제3조1호 중 “「도서관법」 제2조 제2호”를 “「도서관법」 제3조 제2호”로 한다.

제17조1항 중 “「도서관법」 제30조 제3항”을 “「도서관법」 제34조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도서관법」의 개정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도서관 자료 제공 및 독서문화진흥 활성화를 통해 사회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인용 조례 및 상위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17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14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60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서관법」 제4조, 제27조 및 제44조”를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진흥법」”으로 한다.

제7조2항 중 “「도서관법」 제31조의2”를 “「도서관법」 제38조 제1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진흥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생활환경과 인접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관이 평생교육의 장으로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끔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상위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안 제7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2023년 4월 14일

※ 엑셀파일 별첨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951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조례에서 일부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 정원관리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 1) 일반직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 ▶ 5급: 48명 → 47명(1명 감소)
- 2) 별정직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 ▶ 5급 상당: 0명 → 1명(1명 증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1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95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 본청 실·과장의 분장사무(제9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

[별표 3] 평생학습원장의 분장사무(제14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조직개편에 따른 분장 사무를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구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본청 및 사업소의 부서별 분장 사무를 보완·정비함(안 별표 1 및 별표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별표]** 사무 전결 기준(제4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

2023년 4월 14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953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전결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구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단위사무 신설·변경 및 기안·전결권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별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  
한다.

2023년 4월 1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47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규칙에서 직종별 정원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부서의 정원내용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부서의 직종·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1).
  - ▶ 총무과 / 34명
  - 일반직: 5급 2명 → 1명(1명 감소)
  - 별정직: 5급상당 0명 → 1명(1명 증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3년 4월 1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47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건축과장”을 “청사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방화관리담당자”를 “청사관리업무 담당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직속기관장·사업소장”을 “청사관리업무 담당과장(도서관의 경우, 관장)”으로, “방화관리담당자”를 “청사관리업무 담당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동장”을 “청사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방화관리담당자”를 “청사관리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직속기관장·사업소장”을 “청사관리업무 담당과장(도서관의 경우, 관장)”으로, “방화관리담당자”를 “청사관리업무 담당자”로 하고, 같

은 항 제3호 중 “동장”을 “청사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방화관리담당자”를 “청사관리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소방안전관리자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로 한다.

제9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상위법이 제정·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분장 사무에 맞게 소방안전관리자 및 화기단속 책임자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상위법 제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제9조).
- 나. 조직개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와 그 부책임자, 화기단속책임자와 그 부책임자를 조정함(안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 다. 오탈자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안 제5조제1항 및 제4항).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4항 및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과를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4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기준점 종류	기준점 번호	전		후		비 고
		평면직각중형선좌표		평면직각중형선좌표		
		X 좌 표	Y 좌 표	X좌표	Y좌표	
도근점	3010			424773.06	237980.87	세계좌표(신설)
도근점	3011			424738.20	237889.23	세계좌표(신설)
도근점	3012			424703.24	237814.66	세계좌표(신설)
도근점	3013			424811.64	237743.60	세계좌표(신설)
기 준 원 점 명		중부원점				
소 재 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및 와동 일원				
측 량 년 월 일		2023년 4월 11일				
측 량 성 과 보 관 장 소		대덕구청 토지정책과				
비 고		-				

끝.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4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래동 457-1	비래골길 36	2023. 4. 14.	건물신축	비래 골 자연마을 명 반영
중리동 240-27	홍도로119번길 22	2023. 4. 14.	건물신축	홍도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1,1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신탄진동 113-24	대덕대로1527번길 370	2023. 4. 14.	건물신축	대덕대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15,2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석봉동 316-49	석봉로30번길 52	2023. 4. 14.	건물신축	석봉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3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책과(☎ 042-608-5306)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무연고 사체를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무연고 사망자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령)	등록기준지	발견일시 (사망일시)	발견(사망)장소	사망원인	처리방법
			주민등록상주소				
최강식	남	77.11.23. (만45세)	경남 진주시 금산면 충천리 360번지 대덕구 신탄진로810번길 33 306호	'23.3.11. (토) 22:00경 추정	대덕구 신탄진동로7 번안길 23 101호 (삼오모텔)	기타 및 불상	화장 후 봉안

#### 2. 발생상황

- 2023. 3. 16.(목) 08:0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로 7번안길 23, 삼오파크 101호 내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
- 3. 봉안기간 : 5년(2023. 3. 30. ~ 2028. 3. 29.)
- 4. 봉안장소 :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대전추모공원(1관1층-도라지6424)
- 5. 공고기간 : 2023. 4. 14. ~ 2023. 5. 13.
- 6. 연락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장애인과 ☎ 042-608-4793) 끝.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자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공고기간: 2023. 4. 14. ~ 2023. 4. 28.(15일간)
- 2.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제37조제7항
- 3.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내용
  - 가.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직권말소
  - 나. 대상업소: 대덕구 대전로1397번안길 70, 가동 1층 (읍내동) / 주식회사 오케이푸드 (김○용)
  - 다.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 주식회사 오케이푸드(사업자등록 폐업일 2022. 10. 11.)
- 4. 고지사항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3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5.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위생과 식품유통팀 ☎(042)608 - 6963. 끝.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관련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4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 가. 과태료 부과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같은 법 제16조
  - 나.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기 간 : 2023. 4. 14. ~ 4. 30. (16일간)
4. 공고대상 : 별첨
5. 공시송달 내용
  - 가.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관련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환경과(☎042-608-6866)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사전통지서의 경우, 2023. 4. 30.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 부과금액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부과통지서 및 독촉고지서의 경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 및 이후 매월 1.2%의 증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되며, 납기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덕구 환경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라. 아울러 위 기간이 도래하면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문 의 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과(☎042-608-6866) 끝.

[별첨1]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차량번호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반송사유
강*상	40라32**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87 ***동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0,000	폐문부재
오*지	24저11**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31길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0,000	수취인불명
오*진	38머69**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 71, ***동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0,000	폐문부재
정*임	151누84**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167번길 14, *동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0,000	폐문부재
이*연	194두39**	대전광역시 유성구 와룡로136번길 97, ***동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0,000	폐문부재
이*순	63나53**	대전광역시 대덕구 우암동로17번길 19,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0,000	폐문부재
김*희	16버89**	충청남도 금산군 재원면 구역평촌1길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0,000	폐문부재

[별첨2]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차량번호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반송사유
김*우	136노36**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98번길 14,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0,000	폐문부재
김*진	35루90**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서로10번길 21, ***동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100,000	폐문부재
강*구	54소7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32, *동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0,000	폐문부재
박*근	12주56**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 211, ***동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0,000	수취인불명

[별첨3]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차량번호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반송사유
조*범	106호20**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중로46번길 71,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105,400	폐문부재
송*현	55무74**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5번길 18 2층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5,400	수취인불명
김*영	61머88**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로15번길 *, *층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5,400	폐문부재
김*기	58노56**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145번길 1,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5,400	폐문부재
김*영	48두49**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87, ***동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5,400	폐문부재
위*복	28러47**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87, ***동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5,400	폐문부재
위*복	28러47**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87, ***동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4,200	폐문부재
최*영	104하76**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로30번안길 57, ***동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4,200	폐문부재
이*자	54소72**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로 106, ***동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0,000	수취인불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434호

**2023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비 신청  
공고**

2023년 대덕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비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공고내용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비 신청 안내 / 대상요건 충족자
- 대상자  
- 2002년 7월 15일 이전부터 대덕구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 위 조건 만족 대상자로부터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증여 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자로 상속 및 증여를 받기 전부터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전부 증여와 상속은 1회에 한함.) 단,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덕구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도 포함한다.
- 신청기간 : 2023. 4. 14.(금) ~ 2023. 5. 15.(월) 18:00까지
- 접 수 처 : 대덕구청 도시계획과(별관4층) 끝.
- 구비서류 : 직접지원비 지급 신청서(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포함) 및 관련 서류 ※ 직접지원비 지급 신청서상 신청인 제출서류 목록 참고
- 문의사항 : 대덕구청 도시계획과 상수원관리팀 (☎ 042-608-6872) 끝.

###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신청서 및 실거주 확인서

(앞쪽)

집수번호	집수일				
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주민등록등(초)본 등록 주소				
실거주	지역구분	<input type="checkbox"/> 상수원보호구역 <input type="checkbox"/> 수변구역			
	확인방법	<input type="checkbox"/> 현장확인 <input type="checkbox"/> 공과금영수증 <input type="checkbox"/> 기타( )			
	확인자	<input type="checkbox"/> 거주지관할 이·통장	<input type="checkbox"/> 담당공무원	확인일	. .
	<input type="checkbox"/> 성명		<input type="checkbox"/> 연락처		
대상자 선정 구분	<input type="checkbox"/> 원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상속 및 전부증여자 <input type="checkbox"/> 기타(사유: )				
(전용카드)	금융기관명	신청금액			
지급계좌	계좌번호	예금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상수원관리지역에 실거주 및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등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2023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본인은 주민지원사업비 부당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부당 수령금액의 환수, 향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 배제, 부당 수령금에 대한 5배의 제재부과금과 제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3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대덕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 1부.	※ <참고> 제16조제2항 관련(서류제출 범위 관련) <table border="1">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제출서류 목록</th> </tr> <tr> <th>필수제출</th> <th>필요시 제출*</th> </tr> <tr> <td>원대상</td> <td>1, 2, 7</td> <td>4, 5</td> </tr> <tr> <td>상속</td> <td>1, 2, 3, 7</td> <td>4, 5</td> </tr> <tr> <td>전부증여</td> <td>1, 2, 3, 6, 7</td> <td>4, 5</td> </tr> </table>	구분	제출서류 목록		필수제출	필요시 제출*	원대상	1, 2, 7	4, 5	상속	1, 2, 3, 7	4, 5	전부증여	1, 2, 3, 6, 7	4, 5
	구분			제출서류 목록												
			필수제출	필요시 제출*												
원대상	1, 2, 7	4, 5														
상속	1, 2, 3, 7	4, 5														
전부증여	1, 2, 3, 6, 7	4, 5														
2.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토지대장 1부.	* 등기부등본에 등기원인, 등기원인일이 없는 경우															
5. 건축물대장 1부.																
6. 재산세 과세내역 자료 1부.																
7.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토지(건물) 내역 (총 필지수 : )						
대상구분 (○표)	재산 구분	읍·면·동	리	지번	면적 (㎡)	비고
상수원, 수변	토지					
상수원, 수변	건물					
상수원, 수변						
상수원, 수변						
상수원, 수변						
상수원, 수변						
상수원, 수변						
상수원, 수변						
상수원, 수변						

#### 유의사항

##### 1.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 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자

가. 원대상자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관리청(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교육, 질병치료, 공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

\* (상수원관리지역 범위)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만 해당 (특별대책지역은 제외)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 상수원보호구역 : '02.7.15일 이전, 수변구역 : '02.9.18일 이전

\*\*\* 상수원관리지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토지 소재지가 아닌 다른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관리청(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거주하는 경우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나.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가”에 해당하는 주민이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써, 상속 또는 전부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관리청(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전부증여를 받은후 교육, 질병치료, 공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

\* 상속으로 새로이 지원대상자가 되기 위하여는 사망일(민법상 상속기준일) 이전에 관할 관리청(시·군·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지원시점은 토지 등의 등기가 완료된 이후임

##### 2. 실거주 기준

가. “실거주”라 함은 실제로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 지역에서 생활을 주로 영위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함

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주소(실거주)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현주소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다. 담당 공무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입증자료의 확인 대상자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납입 증명서, 전화·전기·수도·가스·TV·인터넷 등 각종 공공요금 납입 영수증, 신용카드의 대조교통 이용명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의 확인 후 실제 거주 사실 확인을 하여야 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윤 기관(해당 시·군·구,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3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동의인

210mm×297mm[백상지 80g/㎡]

## 2024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계획 공고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요조사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2023년 4월 14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지원 목적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내진성능 확보)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지원

#### 2. 지원 대상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에 위치한 민간 소유 건축물
- <공공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법령위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을 대상으로 함.

※ 공공건축물 :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유지·관리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중앙행정기관
- 2) 지방자치단체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4)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공사·공단

#### 3. 지원 신청 자격

- 위 <3번> 지원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법인, 단체 포함)\*로서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국토안전관리원)

으로부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다만, 다음의 지방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 소유자 등(법인, 단체 포함)\*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건축물 관리를 위임받은 자

#### ■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자(법인, 단체 포함)

- 보조금의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이미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원에서 내진성능평가 비용의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자
- 기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 4. 지방보조금 지원내용 및 범위 등

- 지원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 (내진성능평가비의 100%, 인증수수료의 100%)
- 인증 지원계획 공고일 이전에 실시한 내진성능평가비에 대한 비용도 지원 가능
  - 지원범위 · 비율 · 한도 등

지원 범위	지원 비율(%)	최대 지원 한도 금액	비고
계		40,000천원	
내진성능평가비	100%	30,000천원	국비 60%, 시비 20%, 시군비 20%
인증수수료	100%	10,000천원	국비 60%, 시비 20%, 시군비 20%

#### 【 지원 한도금액 산출 근거】

- ① 내진성능평가비 지원한도 금액 : 기준금액 30,000천원×지원비율 1.0 = **30,000천원**
- ② 인증수수료 지원한도 금액 : 기준금액 10,000천원×지원비율 1.0 = **10,000천원**

5. 수요조사 기간: 2023년 5월 18일까지

6. 신청방법: 유선전화 신청(대덕구 안전총괄과 ☎ 042-608-5353)

7. 기타사항

○ 성능평가 결과 내진기준 미충족으로 인한 내진보강 필요시 보강공사 추진 여부는 건물주의 선택사항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대덕구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 게시) 인증제 안내서 참고

※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참고로 사업 추진 예정이며, 추후 사업(지원)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446호

##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3년 4월 14일

###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부과, 본부과, 압류예고 압류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고

3. 공고(의견제출) 기간 : 2023. 4. 14. ~ 2023. 4. 27. (14일간)

4. 기타

가.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사전부과 대상자는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심한 장애 이상), 국가유공자(상이 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감경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경우 재산이 압류(대체)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 대덕구청 노인장애인과(☎042-608-6805, 68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붙임] 공시 송달 명단

연번	소유자 (임차인)	주 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1	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43, 107동 29**호 (신탄진동, 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1단지)	63무22**	2023-02-15 22:13:00	대청로 43	2023.03.15	2023.03.17	폐문부재
2	박**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78, 102동 10**호(법동, 보람아파트)	대전32노 98**	2023-03-14 00:50:16	법동 191-1	2023.03.23	2023.03.27	폐문부재
3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55, 108동 33**호 (석봉동, 금강엑셀루타워)	33주45**	2023-01-22 22:35:24	석봉동 770	2023.03.15	2023.03.17	폐문부재
4	황**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성지산로 36, 115동 2**호 (삼천동1가, 쌍용아파트)	194호 48**	2023-01-24 21:26:09	법동 284-1	2023.03.15	2023.03.17	이사불명
5	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60번길 90, 4**호 (구암동, 미성아트빌)	56부85**	2023-02-23 06:19:25	법동 285-3	2023.03.15	2023.03.23	폐문부재
6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78, 110동 1** 호(법동, 보람아파트)	29더60**	2023-02-24 23:00:23	법동 191-1	2023.03.15	2023.03.17	폐문부재
7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43, 104동 22**호 (신탄진동, 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1단지)	43부13**	2023-02-26 20:23:32	신탄진동 771	2023.03.15	2023.03.17	폐문부재
8	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북로 7, 102동 14** 호(봉명동)	46우85**	2023-02-28 20:28:22	중리동 462	2023.03.15	2023.03.23	폐문부재
9	김**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140번길 13*~*(용운 동)	06더94**	2023-03-01 10:58:40	송촌동 446-1	2023.03.15	2023.03.17	이사불명
10	송**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368번길 11, 209동 4**호(성남동, 효촌마을아파트)	183부 92**	2023-03-02 17:02:00	신탄진동 141-28	2023.03.15	2023.03.23	폐문부재
11	이**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적하2길 **	124가 91**	2023-03-03 07:51:38	비래동 535	2023.03.15	2023.03.16	수취인 불명
12	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281, 221동 11**호 (둔산동, 샘머리아파트)	11수46**	2023-03-04 16:41:41	송촌동 462	2023.03.15	2023.03.23	폐문부재
13	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60번길 39, 가동 4**호(봉명동, 용화빌라)	66마62**	2023-03-04 18:20:16	중리동 462	2023.03.15	2023.03.23	폐문부재

연번	소유자 (임차인)	주 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14	노**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180번길 23, 203동 12**호(판암동, 주공아파트)	156보 86**	2023-03-07 13:10:58	비래동 241-1	2023.03.23	2023.03.28	폐문부재
15	신**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대하로 195, 203동 7**호(영무에다움 2차아파트)	11서39**	2023-03-07 17:22:16	석봉동 770	2023.03.23	2023.03.24	폐문부재
16	이**	충청남도 논산시 대림길 7, 101동 22**호(부 창동, 대림아파트)	61부41**	2023-03-11 16:28:34	송촌동 534	2023.03.23	2023.03.27	폐문부재
17	한**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들목팽나무길 **	123가 50**	2023-03-11 23:20:46	비래동 47-1	2023.03.23	2023.03.28	폐문부재
18	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천로 3**, 2층(탑립동)	48수57**	2023-03-12 07:05:45	중리동 410-7	2023.03.23	2023.03.27	수취인 불명
19	주**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55, 111동 28**호(석봉동, 금강엑슬루타워)	46가21**	2023-03-12 23:54:28	석봉동 770	2023.03.23	2023.03.27	폐문부재
20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북로58번길 22, 3** 호(덕암동, 골든캐슬)	173머 82**	2023-03-14 07:04:58	상서동 146-11	2023.03.23	2023.03.27	폐문부재
21	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1006번길 5*(오 정동)	139마 82**	2023-03-15 18:08:46	중리동 410-1	2023.03.23	2023.03.27	폐문부재
22	이**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61, 2**호(가양동)	51도61**	2023-03-17 10:43:33	법동 192-2	2023.03.23	2023.03.28	폐문부재
23	마**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367번길 21, 1**호(갈 마동, 엘립빌라)	07머80**	2023-03-17 18:56:51	송촌동 444	2023.03.23	2023.03.27	폐문부재
24	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로37번길 13, 102동 5**호(송촌동, 대호하이츠)	231라 61**	2023-03-19 00:49:46	송촌동 494-1	2023.03.23	2023.03.27	폐문부재
25	예**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18번길 62, 104 동 18**호(와동, 현대아파트)	20가01**	2023-03-19 16:00:07	송촌동 463	2023.03.23	2023.03.27	폐문부재
26	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93번길 58, 107동 1**호(석봉동, 원창빌라)	19머59**	2023-03-19 21:14:48	석봉동 780	2023.03.23	2023.03.27	폐문부재
27	이**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대학2길 *	80수04**	2023-01-24 15:45:05	신탄진동 141-28	2023.04.05	2023.04.06	수취인 불명

- 65 -

연번	소유자 (임차인)	주 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28	하**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로 111-17, 1**호(용 계동)	42무65**	2023-01-21 19:27:00	신탄진로218번 길 22	2023.04.05	2023.04.11	폐문부재
29	오**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중척길 2**-9	53로88**	2023-01-23 14:33:00	대덕대로 1555	2023.04.05	2023.04.06	폐문부재
30	장**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용강로250번길 **	145우 70**	2023-01-29 11:29:53	송촌동 463	2023.04.05	2023.04.10	폐문부재
31	안**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 6층호 (만년동)	283라 12**	2023-01-30 07:39:28	석봉동 770	2023.04.05	2023.04.06	이사불명
32	홍**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경마을로33번길 8, 101 동 1**호(신탄진동, 성하타운)	94루35**	2023-02-05 13:04:03	석봉동 770	2023.04.05	2023.04.07	폐문부재
33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새말3길 41, 102동 12** 호(상서동, 상서행복주택)	48보96**	2023-02-08 22:20:31	상서동 146-11	2023.04.05	2023.04.07	폐문부재
34	정**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469번길 45, 2**호(용 전동)	56러24**	2023-02-17 20:28:08	중리동 207-1	2023.04.05	2023.04.13	폐문부재
35	이**	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117번길 **, 1층(삼성 동)	32거59**	2023-02-19 02:17:47	석봉동 313-1	2023.04.05	2023.04.13	폐문부재
36	최**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251번길 18-35, 나동 1**호(내동)	24소57**	2023-02-20 11:17:59	법동 285-3	2023.04.05	2023.04.12	폐문부재
37	배**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761번길 24, 110동 2**호(읍내동, 현대아파트)	68서06**	2022-12-15 15:53:38	읍내동 54	2023.04.05	2023.04.07	폐문부재
38	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45, 3**호 (궁 동)	335머 15**	2022-12-17 09:44:20	상서동 146-11	2023.04.05	2023.04.11	폐문부재
39	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큰골길 1**, (오금동)	28가72**	2022-12-22 06:23:07	문평동 43-9	2023.04.05	2023.04.10	폐문부재
40	임**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78, 106동 6** 호(법동, 보람아파트)	24무76**	2022-12-28 12:41:04	송촌동 459-4	2023.04.05	2023.04.06	수취인 불명
41	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9번길 36, 110 동 16**호(오목천동, 오목천역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07우99**	2023-01-06 07:46:49	오정동 44-1	2023.04.05	2023.04.11	폐문부재

- 66 -

연번	소유자 (임차인)	주 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42	한**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장자길 35-**	11노72**	2023-01-06 19:46:38	중리동 462	2023.04.05	2023.04.13	폐문부재
43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136번길 13, 2동 2층 2**호(상서동, 영구주택)	40조49**	2023-01-08 12:13:15	법동 284-1	2023.04.05	2023.04.06	이사불명
44	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로42번길 61, 310동 10**호(송강동, 청솔아파트)	97보24**	2023-01-09 13:49:49	대화동 40-37	2023.04.05	2023.04.11	폐문부재
45	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300, 105동 7**호(문지동, 효성해링턴플레이스)	15조15**	2023-01-16 15:44:19	신탄진동 141-28	2023.04.05	2023.04.11	폐문부재
46	이**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적하2길 **	124가91**	2023-01-20 16:44:17	비래동 535	2023.04.05	2023.04.06	수취인 불명
47	임**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서로 30, 104동 15**호(중리동, 영진로얄아파트)	313더88**	2023-01-21 03:01:57	법동 284-1	2023.04.05	2023.04.07	폐문부재
48	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4로 18, 104동 5**호(운서동, 영종금호어울림1차아파트)	77오47**	2023-01-22 11:59:09	비래동 140-5	2023.04.05	2023.04.07	폐문부재
49	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170, 4**호(광장동, 한강빌리지)	51러93**	2023-01-23 14:04:46	상서동 373-21	2023.04.05	2023.04.07	이사불명
50	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신기2길 *-*	82수35**	2022-12-03 03:22:26	비래동 47-1	2023.04.05	2023.04.06	폐문부재
51	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60번길 90, 4**호(구암동, 미성아트빌)	56부85**	2022-12-11 09:36:27	중리동 462	2023.04.05	2023.04.11	폐문부재

- 67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44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의 제명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12건의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하여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전화 : 042-608-6061, FAX : 042-608-3811,

E-mail : lmseon01@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전화 : 042-608-6061)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 안

**제1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5조(「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조(「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8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전단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9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0조(「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1조(「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2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5-1호서식”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 한다.	제11조(회계관리) ----- -----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 ③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원인자 부담)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등의 시행자에게 주소정보안내 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	제5조(원인자 부담)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

회계 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의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 · 집행한다.	관리에 관한 규칙」-----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대덕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 -----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 ---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의 관리 · 운용) ① · ② (생략)  ③ 기금의 출납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5조(기금의 관리 · 운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르고 기금의 수입 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전광역 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 ----- ----- ----- 「대전광역 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 칙」-----.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①·② (생 략)	제10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반환신청 이 있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에 규정 된 과오납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반환하며, 주차장관리를 위탁하 였을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따 로 정한 방법으로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신청과 동시에 잔여분 회수 주차권 및 정기주차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생 략)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대 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 칙」을 준용한다.	② ----- 「대 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 한 규칙」-----.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준용)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 등에 대해서는 「대전 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0조(준용) ----- ----- 「대전 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준용) 기금의 관리 및 운 용 시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 납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 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 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 다.	제10조(준용) ----- ----- ----- 「대전광역시 대덕 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 계 규칙」 별지 제25-1호서식 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 함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담금 납입절차 등) ---- -----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3호서식- ----- ----- ----- -----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  
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  
례 등 일괄 정비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대덕구청 CCTV 증설에 따른 행정예고

화재 및 범죄 예방 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덕구청 내부에 CCTV를 증설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4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행정예고 내용

○ 대덕구청 내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목적 : 청사 범죄 및 화재예방 등 시설물 안전관리

4. 설치장소

연 번	설 치 장 소	대 수	용 도
계		4대	범죄 예방 및 시설관리
1	직원식당 내	1대	
2	본관 1층 중앙현관	1대	
3	본관 1층 엘리베이터	1대	
4	본관 1층 별관통로	1대	

5. 촬영범위 및 시간 : 대덕구청 청사 내부, 24시간 연속 촬영 / 녹화

6. 공고방법 : 대덕구청 홈페이지(<http://www.daedeok.go.kr>)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3. 4. 14.(금) ~ 2023. 5. 4.(화)

8. 의견제출

○ CCTV 추가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23. 5. 4일 18: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붙임]를 대덕구청 총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CCTV 추가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방문, 팩스(042-608-3821), 우편 등

라.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총무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대덕구청 총무과 김영민 (042-608-6502) 끝.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